

법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못할 이유 없다”

✎ 김한주 기자 | ⓒ 승인 2020.12.30 11:18

법학계, 명확성, 책임주의 원칙 쟁점 분석

“무전취식도 10년 이하 징역형...

중대재해 3~5년 징역형 과잉 아냐”

법리적으로도 “헌법 위반 없다” 결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향한 바람 ⓒ 김한주 기자

법학자 32명, 변호사 60명이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10만 국민발의안을 제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학계는 현재 법을 둘러싸고 명확성의 원칙, 무죄추정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 헌법상 기본원칙을 검토했으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헌법상 어떤 문제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학계는 원안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법학계는 “경제 성장에 따라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사회적 위험도 커졌다. 그에 상응해 국가의 의무도 변화돼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 대응에도 산재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흔하다. 기존의 법적 수단으로는 문제 해결에 이르는 대응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안이 제안됐고, 이에 대한 반대 주장 가운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있다”며 의견서 작성의 취지를 밝혔다.

법학계는 먼저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둘러싼 쟁점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위험 방지 의무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라며 원안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법학계는 “법규범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한 단어나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조항과의 유기적·체계적 관계에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법 조항 하나를 두고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또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면서도 위해·위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인정될 정도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 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안이 ‘책임주의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법학계는 오히려 대표이사 등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 관리를 책임지지 않았던 게 문제라고 꼬집으며, 원안을 제정해야만 과거와 다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학계는 “책임자에게 응분의 업무수행이 요구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전했다.

무전취식도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 3~5년 징역형은 과도하지 않아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두고도 재계 비난이 거세다. 추정은 어떤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이를 증명했다고 보는 것이다. 법학계는 “사업주가 5년간 3회 이상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 한정되므로 중대재해 발생을 추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당한 유죄추정을 내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법학계는 “(원안에 따른 피고인을) 단순한 과실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매우 장기적이고 의식적인 의무 위반 행위에 의해 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로 고의범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또 “결인의 무전취식 행위까지도 해당한다고 하는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실제 재해를 초래한 행위가 3~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게 과도하다고 하느냐”라고 일갈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지적을 두고는 “생명,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질서라는 점을 감안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처벌의 방법을 취할 수 있다. 나아가 민사와 형사의 중간 지점에서 징벌적인 의미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이미 징벌적 배상제도를 규정하는 다른 법률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모든 사업주에 적용해야"

법학계는 쟁점 설명에 이어 정부안의 ‘단계별 법 적용’을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것으로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4년 유예,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법학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 중 50인 미만이 98.8%에 이른다. 적용 유예 사업장이 거의 모든 사업체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재해의 78.7%, 중대재해 89.4%, 사망재해 79.1%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 등 다중이용업소의 법 적용 제외 면에서도 비판했다. 현재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산안법도 적용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는 게 아니라는 법학계의 설명이다.

법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추정 조항을 비롯한 각 조항이 중대재해의 특성, 법 제정안 논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 더는 유족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한주 기자 hanjukim25@gmail.com